

#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수집,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## ■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목적

### 1. 이용목적

- 1) (금융)거래관계의 설정여부 판단 및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법령상 의무이행, 민원처리 등
- 2)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### 2. 신용정보의 종류

#### 1) 식별정보

- 개인 - 성명, 주소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직업(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, 실제거소지)
- 법인 - 기업체명, 법인등록번호, 사업자등록번호, 대표자명, 업종, 주소

#### 2) 신용거래정보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종류, 기간, 금액 및 한도 등의 정보

#### 3) 신용도판단정보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연체, 부도, 대위변제, 기타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의 정보

#### 4) 신용능력정보

- 개인의 직업, 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, 회사의 재무상태, 납세실적 등의 정보

#### 5) 공공정보

- 개인회생, 파산, 면책, 채무불이행자 등재 등 법원의 재판·결정 정보, 체납정보 등의 정보

#### 6) 기타 본인이 제공한 신용정보

## ■ 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시 제공대상자,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신용정보의 종류

### 1. 제공대상자

- 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, 신용조회회사(NICE평가정보(주) 등)

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
2.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
-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를 집중·수집·보관·제공
  -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

3.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

- 식별정보
- 신용거래정보
- 신용도판단정보
- 신용능력정보

■ 보유 및 이용기간,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1.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

- 원칙적으로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보유·이용합니다. 단,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분리하여 별도 보관후 보유·이용합니다.

2.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

-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목적 달성, 보유·이용기간의 종료 등 신용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를 파기합니다.
-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, 종이 문서에 기록·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.

3.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

- 현재 신용정보처리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향후 신용정보주체를 위한 서비스 이행 등을 위하여 외부 전문 업체에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, 신용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, 신용정보에 관한 무단 이용 등 금지 등을 규정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, 수탁자 명을 본 활용체제 등을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

## ■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

### 1. 신용정보 열람·정정 청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,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2. 신용정보 이용·제공사실 통지 요구권

-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통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# 3. 개인신용정보 제공·이용 동의 철회권

- 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해 신용정보주체는 동의한 내용을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. 단,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 수집·이용은 회사와의 계약체결 및 거래관계를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므로, 신용정보 수집·이용 동의를 철회한 경우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### 4. 신용정보 삭제 청구권

-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본인의 개인 신용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0조의2 제2항 각 호의 경우 삭제할 수 없습니다.

### 5.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

- 고객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·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상거래관계 거절·중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, 동 정보를 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,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## ■ 신용정보관리 보호인

- 신용정보관리·보호인(개인정보 보호책임자) : (주)하람기술투자 준법감시인 이준호
- 연락처 : 02) 2038-8652